

## 대형사고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

앞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1년간 3회 이상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에는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또 하도급업체 재해율이 원청업체 재해율에 합산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에 보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등 선제적 예방관리 감독 강화,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사업장 자율예방활동 활성화, 안전문화 정착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다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중대 재해의 사전예방과 재방발지를 위한 사항들이 총망라돼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산업 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부는 산안법을 위반해 1년간 중대재해가 3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시스템이 개선될 때까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는 가운데 산재예방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의 명단을 유관기관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또 고용부는 하도급업체 재해율을 원청업체 재해율에 합산 관리하는 등 원청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예로 도급인이 산재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위험장소가 기준 ‘화재·폭발 우려 특정장소’, ‘위험 물질 제조·취급장소’ 등 16개에서 ‘화학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장소’, ‘방사선 노출작업’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법 위반에 대한 원청의 처벌규정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노동계, 학계 등에 꾸준히 주장한 내용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단순히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만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자율적으로 재해예방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키로 했다. 우선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1만 개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전담 감독관을 배치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협동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 컨설팅 등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거푸집동바리 설치·해체작업, 지게차 운전작업 등 건설·제조업의 사망사고 다발 10대 작업과 관련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특징은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법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며 “특히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대형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고용부, 산재예방 정책 전문성 강화

고용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업종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부서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증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 ‘산업안전과’와 ‘산업보건과’, ‘화학사고예방과’를 신설키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조 산재예방과’, ‘건설산재예방과’, ‘서비스 산재예방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없어

졌다. 다만 산재예방정책과와 산재보상 정책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고용부의 이 같은 직제개편은 그동안 업종 중심으로 전개하던 산재예방사업을 앞으로는 기능별로 전문화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화학사고예방과의 신설은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설되는 과별로 업무를 살펴보면 먼저 산업안전과의 경우 △산업안전 정책 수립·시행 △건설근로자 기초 안전교육제도 운영 △중대재해 보고·분석 및 대책수립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산업보건과는 △석면관리 및 석면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화학사고예방과는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정책 수립·시행 △공정안전관리(PSM)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등에 집중하게 된다. 다른 과에 일부 업무를 이관한 산재예방정책과는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계 운영, 산업 안전보건 홍보, 안전문화진흥 등의 업무에 매진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에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할

인력 35명(5급 1명, 6급 16명, 7급 18명)을 증원하는 내용과 본부 내에 정보화기획팀, 개발협력팀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재계, 정부에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개선 요구

경제5단체장 등 재계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입법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재계는 화학사고 발생 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 회장단은 9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이날 경제5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노동과 환경,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가 대거 도입돼 성장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면서 "기업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규제입법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제조업 기반을 위협하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2015년부터 등록이 면제됐던 연구개발 물질과 100kg 미만 소량화학물질까지 화학물질 대상으로 등록이 의무화된다"면서 "막대한 비용 부담과 6개월의 등록절차로 신제품 개발경쟁 낙오, 수출납기 지연 등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재계는 EU, 호주, 미국 등 환경선진국의 경우 1t 미만 화학물질과 R&D 물질이 등록면제대상이고, 스마트폰처럼 하나의 제품에 수천 개의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제조업의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법령이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유해물질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반영해 수위 조절을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은 향후 글로벌 시장전망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